

부부공동명의 안내문

- ※ 제기동역 아이파크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(당첨자 발표일 2025년 8월 13일)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.
 ※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,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(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) 제4항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 ※ 해당 기간 이후 부부공동명의변경이 어려우니, 반드시 해당 기간내 방문하여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 ※ 예비부부의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부부공동명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

신청 기간	2025년 9월 26일(금) ~ 9월 27일(토), 2일간 10:00 ~ 16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) ※ 사전 전화예약필수, 당일예약 불가
신청 장소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-13번지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
유의 사항	당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 문의	분양사무실 : 02-957-3411(10:00 ~ 17:00, 12시 ~ 13시 점심시간)

부부공동명의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

구분	내용	진행 장소						
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(계약자 진행)	• 견본주택 방문 전 계약자 본인이 동대문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① 증여계약서 작성 ② 증여계약서 검인(동대문구청 본관1층 창구 직접 방문) ※ 지자체검인, 거래지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. • 필요서류(관련 내용은 동대문구청 토지정보팀에 문의바랍니다) ① 분양 계약서 원본 ② 계약자 및 배우자 인감도장 ③ 방문자 신분증	동대문구청 토지정보팀 (본관1층 창구) (02-2127-4217)						
부부공동명의 신청 및 접수	• LH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 및 접수(LH 전매동의서 날인까지 약 3주 소요) •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작성 • 필요서류(1개월 이내 발급분) <table><tr><td>공통</td><td> • 증여계약서(검인) •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(원본) • 가족관계증명서 2부 • 주민등록표등본 2부(배우자 분리세대는 각2부) </td></tr><tr><td>매도인(계약자) (대리인불가)</td><td> • 매도용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소유권이전용)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※ 매수자 인적사항은 '배우자'의 인적사항만 기재(공동기재X)</td></tr><tr><td>매수인(배우자)</td><td> 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•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1부 추가 ※ 외국인 추가서류(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확인증, 외국인 등록증)</td></tr></table> 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. ※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(계약자)-불가능, 매수인-가능	공통	• 증여계약서(검인) •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(원본) • 가족관계증명서 2부 • 주민등록표등본 2부(배우자 분리세대는 각2부)	매도인(계약자) (대리인불가)	• 매도용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소유권이전용)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※ 매수자 인적사항은 '배우자'의 인적사항만 기재(공동기재X)	매수인(배우자)	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•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1부 추가 ※ 외국인 추가서류(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확인증, 외국인 등록증)	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 (02-957-3411)
공통	• 증여계약서(검인) •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(원본) • 가족관계증명서 2부 • 주민등록표등본 2부(배우자 분리세대는 각2부)							
매도인(계약자) (대리인불가)	• 매도용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소유권이전용)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※ 매수자 인적사항은 '배우자'의 인적사항만 기재(공동기재X)							
매수인(배우자)	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2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부 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생략) • 신분증 •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,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1부 추가 ※ 외국인 추가서류(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확인증, 외국인 등록증)							
부부공동명의 작성 및 계약서 불출	• 추후 별도 일정 안내(LH 전매동의서 승인 후 일괄 문자 발송) 개별 통보 예정 ※ 공급계약서 대리인 수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만 가능 • 필요서류 ① 신분증(방문하시는 명의자) ② 공동명의자 인감도장(명의자 전부)							
증여 신고	• 계약자 자진신고 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증여세 면제한도 :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	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동대문세무서 (02-958-0481)						

- ※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실 계약자께서는 방문전 절차 및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본주택에 방문 바랍니다.
 ※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실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방문예약을 02-957-3411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 ※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, 세금관련,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(계약자) 본인에게 있으며,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익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당사에서는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)
 ※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, 재증여나 취소는 불가합니다.